

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

의안 번호	478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2009. 4. 27.

제 출 자 : 대전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비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운용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에 대하여 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.

나.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준용하도록 함(안 제5조)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

나. 예산조치 : 2009년 일반회계 정비사업비를 특별회계로 전출

다. 합 의 : 예산담당관 합의

라. 기 타

(1) 규제심사 : 규제 신설·폐지 등 없음

(2) 입법예고 : 2009. 3. 27. ~ 4. 16. / 접수 의견 없음

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경부고속철도 2단계 사업인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설치)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(이하 “사업”이라 한다)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 경부고속철도변정비사업특별회계(이하 “특별회계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3조(세입) 대전광역시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업위탁금
2. 일반회계 전입금
3. 그 밖의 수입

제4조(세출) 대전광역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업비
2. 사업 추진 운영비
3. 그 밖의 사업 부대경비

제5조(준용)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당시 일반회계에 편성된 사업비 중 기 지출한 사업비와 기 계약된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.

관계법령

□ 지방재정법[시행 2008.2.29] [법률 제8852호, 2008.2.29, 타법개정]

제9조 (회계의 구분) ①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 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·세출로서 일반세입·세출과 구분하여 계리(계리)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